**제품 퍼블리싱 및 투자 협력 계약서**

浙江弥谷网络科技有限公司(이하 “갑”이라 칭한다)와 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(이하 “을”이라 칭한다)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협의를 거쳐 제품 퍼블리싱 및 회사 투자/융자 협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.

**제 1 조 【 목 적 】**

양측은 협의를 거쳐 제품 퍼블리싱 및 회사 투자/융자 협력에 대하여 성공적인 사업을 통하여, 공통의 이익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본 계약서를 체결한다.

**제 2 조 【 계약자의 의무 】**

1. “을”이 중국에서 법인을 설립하여, 해당 법인에 등록된 모든 제품의 독점 퍼블리싱 권한을 “갑”에게 일임한다.

2. “을”이 회사 투자/융자에 대한 필요가 있을 시, 해당 요구 내용에 따라, “갑”이 투자자등을 통해서, “을”의 요구를 위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.

**제 3 조 【 계약 세부 조항 】**

1. “을”이 개발한 모든 제품의 독점 퍼블리싱 권한을 “갑”에게 일임하며, 제품 마켓팅 협력 계약서, 출판 일임 증명서 및 자사개발 확인서를 추가적으로 체결하여야 한다.

2. “갑”은 제품 퍼블리싱을 통해서 양사의 이익을 최대화 하기 위해 노력한다. 만약 “을”이 “갑”의 독점 퍼블리싱을 자발적으로 취소하고자 할 경우, 첫 번째 제품에 대해서 “갑”에게 30만 위안을 일시불로 지급하거나, “을” 회사 주식의 3%를 서비스 비용으로서 “갑”에게 지급하는 조건 중 택일하여 지급하고, 독점 권한을 취소할 수 있다.

3. 이를 위하여“을”이 중국에서 법인 설립시 “갑”이 “을”의 회사 주식의 3%를 할당 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. 해당하는 주식은 CHUNG DONGHYUN（여권번호: ）개인이 대신 보유함을 확인한다. 이후,“을”이 첫 번째 제품을 런칭할 때에 다음과 같이 선택할 수 있다.

가. “갑”이 정상적으로 독점 퍼블리싱을 수행하는 경우, “갑”이 3%의 주식을 계속 보유하게 된다.

나. “을”이 다른 퍼블리셔를 선택하기로 결정한 첫 번째 제품을 서비스 할 경우, “갑”에게 30만 위안을 지급하여야 3%의 주식을 양도 받을 수 있다. 만일 “을”이 30만 위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, “갑”이 “을” 3%의 주식 소유권을 보유한다.

4. “을”이 어느 이유로 인해 첫 번째 제품을 서비스 하기 전에 “단지”에 퇴출된 경우, “갑”이 “을”이 첫 번째 제품을 서비스 하며, 본 계약서 제3조 제3항의 내용을 이행할 때까지 “을”의 주식을 보유함을 확인하다.

5. “을”이 자사 발생한 결손이나 외채 등에 대해서 모든 “갑”과 무관함을 확인한다. 또는 “을”의 회사 내부관리 및 인원관리에 대해서 “갑”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사무에 대해서 “갑”과 무관함을 확인하여 이에 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6. “갑”이 소개해 준 투자자가 “을”과 투자 협의를 달성하여, “을”이 투자금을 받은 시 “갑”에게 30만 위안을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“을” 회사 주식의 3%를 서비스 비용으로서 “갑”에게 지급하는 조건 중 택일하여 지급한다. 이 투자 관련 추가 지급 주식은, 제 3 조 2항의 독점 퍼블리싱 권한과 관련된 미리 지급된 3%의 지분과 상관없이 추가 지급하는 조건이다.

**제 4 조 【 계약의 종료 및 해지 】**

1. 계약의 종료는 “갑”과 “을”의 상호간의 합의를 통해서만 종료 가능하다.

2.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중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, 30일 이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상대방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.

**제 5 조 【 보 안 】**

1. 본 계약서 및 계약서에 의하여 공유되는 모든 정보, 자료는 보안 조치를 통해서 외부누출이 되어서는 안되며, 만약 누출이 될 경우, 이는 해당 계약자의 계약 파기 요건에 해당되어, 상대방이 이에 대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, 민사/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지급해야 한다.

2. 만약, 필요에 따라 보안을 외부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경우, “갑”과 “을” 상호간의 승인을 통해서 가능하다.

**제 6 조 【 연락 및 협조 】**

1. 본 계약과 관련된 제반 업무 연락은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 이 경우 문서는 인편 및 우편, 이메일 그리고 팩스로 전달함으로써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한다.

2. 관련 사안 발생 시에는 당사자 간 필요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3. 연락 및 협조 부서는 “갑” 의 기술이사와 “을” 당사자로 정한다

**제 7 조 【 계약 기간 】**

1.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\_36\_개월로 정하고, 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어느 일방의 서면 해지 통보가 없는 한 3개월씩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

**제 8 조 【 개정 및 종료 】**

1. 본 계약의 개정은 당사자간 서면 합의로 가능하다. 개정 또는 추가한 내용은 추가계약서를 통해 진행하고 본 계약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. y

2. 제 5 조에 명시한 보안에 관한 의무는 본 계약서의 효력종료 후에도 계속 유효하다.

**제 9 조 【 기타사항 】**

본 계약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별도 협의 하에 처리한다.

위와 같이 본 계약서의 유효한 성립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를 중국어와 한국어 각각 2통을 작성하여, 각각 서명 날인 후 “갑”과 “을”이 중국어와 한국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.

( 이상 )

2014년 월 일

“갑”

상 호: 浙江弥谷网络科技有限公司

사업자등록번호:

주 소:

대표이사: (印)

“을”

상 호:

사업자등록번호:

주 소:

대표이사: (印)